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입주자 모집 공고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 9. 10.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개인이 사장이면서 직원인 기업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전문기술지식,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심 기업을 말함

## 01 신청대상

- 거주지 : 제한 없음
- 신청자격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입주제외
  - 타 직장에 재직 중인 자(해당 기업 4대보험 가입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이 아닌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자
  - 숙박, 유흥업 및 음식점 등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별표1 참조]

## 02

## 모집분야 및 규모

-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융·복합 콘텐츠산업 분야 우대)
- 모집규모 : 1개사(1인석/1개사)

### <융·복합 콘텐츠산업의 범위>

1. “융·복합 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융합산업을 포함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의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5. “융합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 03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9. 10(수) ~ 2025. 9. 24(수)
- 접수기간 : [2025. 9. 17\(수\) ~ 2025. 9. 24\(수\) 16:00 까지](#)
- 작성방법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http://www.gbbiz.or.kr>)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achii95@naver.com](mailto:achii95@naver.com)) 접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항목	제출여부	제출부수
1. 입주신청서(첨부 양식)	○	각 1부
2. 사업계획서(첨부 양식)	○	
3. 대표자 이력서(첨부 양식)	○	
4.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첨부 양식)	○	
5.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법인사업자-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	
6. PT용 발표자료(자유 양식)	○	
7.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업체	
8.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해당업체	
9. 기타 가점 증빙서류	해당업체	

○ 가점사항

가 점 사 항		가점
1. 최근 2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지방청 주최 대회 및 행안부 주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포함)		1점
2. 만 39세 이하 청년(예비)1인 창조기업		1점
3.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 기업		1점
4. 센터 중점특화분야(음·복합콘텐츠)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점
6.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또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추천기업		1점
7.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통과자	1점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우수성실경영자)	3점

※ 가점은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부여가능

○ 접 수 처 : 경상북도 안동시 영가로 16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3층 콘텐츠산업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achii95@naver.com](mailto:achii95@naver.com)) 접수

○ 문 의 : Tel) 054-840-7034

## 04 입주선정

○ 선정방법

1) 1차 : 자격 적격 여부 검토

2) 2차 : 서류 및 발표평가(PT발표)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기업에 한해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창업자 역량	- 창업자의 창의성 및 전문성 - 창업자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열정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기술(제품)의 차별성	20
기술성	- 기술(제품)이 미치는 파급효과 - 기술구현의 현실성	20
시장성	- 시장규모 및 경쟁제품 존재 여부 - 해당 제품시장 진출의 가능성	15
고용 및 수출잠재성	- 수출 가능성 - 고용창출 가능성	15
기타	- 입주신청 사유의 적정성 - 입주 후 활동계획의 적정성	10

○ 선정일정

- 1) 1차 자격 적격 여부 검토 : 2025. 9. 29.(월)
- 2) 2차 서류 및 발표평가 : 2025. 9. 30. ~ 10. 14.(화) 예정
- 3) 선정결과 발표 : 2025. 10. 14.(화) 이후 선정기업에 한해 개별 통지
- 4) 입주계약 및 입주 : 선정결과 발표 이후

※ 심사일정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발표 후 입주 예정

## 05 입주조건 및 지원 사항

○ 입주기간 : 계약일로 부터 1년

○ 보증금/임대료/관리비 : 없음

○ 지원 사항

- 1) 회의실,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공동이용 공간제공
- 2) 사무집기(책상, 의자, 캐비닛) 및 공용사무기기(복사기, 프린터, 팩스), 유무선 인터넷
- 3) 정부지원사업 정보, 네트워킹, 창업교육, 경영·세무·마케팅 등 전문가 자문 지원
- 4) 홍보, 마케팅·판로, 지식재산권 등 사업화 지원

## 06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점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응하지 않을 시 2회 경고 후 퇴거 조치

○ 입주기업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3회 이상 필수로 참여하여야 함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기타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창업특화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에 따름

[별표 1] 1인 창조기업의 범위

## 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

□ (정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

\* 관련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 (유예기간)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인정 제외 사유)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시행령 별표 1) >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광 업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금속광업	06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광업지원서비스업	08
제조업	담배제조업	1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1차 금속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수도사업	36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설업	종합건설업	41
	전문직별 공사업	42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	47
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수상 운송업	50
	항공 운송업	51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
	음식점 및 주점업	56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
	보험 및 연금업	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건업	86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대분류(1자리 코드), 중분류(2자리 코드), 소분류(3자리 코드), 세분류(4자리 코드), 세세분류(5자리 코드)로 구성되며, 예를 들어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으로 분류코드가 "05(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로 시작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1인 창조 기업 지원제외 업종으로 구분됨

[별표 2]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1인 창조기업 확인절차

-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업태가 1인 창조기업 대상 업종에 속하는지 확인
  - \* 예비 1인 창조기업인 경우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으로 신청
- ◆ **상시근로자 확인** : 4대 보험가입자 명부를 통해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단 4대 보험가입자 명부 발급이 제한된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확인
  - \* 직장가입자(타직장), 지역가입자(세대주, 세대원), 직장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등
- ◆ **유예기간** : 4대 보험가입자 명부 확인 및 상시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인 자는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 유예기간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1인 창조기업 유예기간으로 인정

